

의안번호	제452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24일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2
----------	-----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24일

발 의 자 :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10.
- 협 의 : 충청북도 농정국 축수산과
- 비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지원대책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u>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u>-----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u>종합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 <u><신 설></u></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u>"종합계획"</u>----- -.</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 <u>6.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지원 대책</u></p>

현행	개정안
<p>6. (생략)</p> <p>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u>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신설></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 ----- <u>양성하여야 한다.</u></p> <p>②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관련법령 발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2. 비용 발생 요인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
- 밀원식물 조성사업의 지원 비용
-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비용

3. 관련조문

- 안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안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 안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주요내용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 발생 예상
 - 조례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비용추계

나. 추계결과 : 19,523,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농가 자부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63,400	63,400	63,400	63,400	63,400	317,000
	(국)	19,020	19,020	19,020	19,020	19,020	95,100
	(도)	5,706	5,706	5,706	5,706	5,706	28,530
	(시군)	13,314	13,314	13,314	13,314	13,314	66,570
	(자담)	25,360	25,360	25,360	25,360	25,360	126,800
		336,800	336,800	336,800	336,800	336,800	1,684,000
	(국)	101,040	101,040	101,040	101,040	101,040	505,200
	(도)	30,312	30,312	30,312	30,312	30,312	151,560
	(시군)	70,728	70,728	70,728	70,728	70,728	353,640
	(자담)	134,720	134,720	134,720	134,720	134,720	673,600
재원 조달	3,834,700	3,884,700	3,934,700	3,934,700	3,934,700	19,523,500	
소 계	3,834,700	3,884,700	3,934,700	3,934,700	3,934,700	15,588,800	
보조금 (국비,기금)	401,060	401,060	401,060	401,060	401,060	1,604,240	
지방세 (도비)	453,068	465,068	477,068	477,068	477,068	1,872,272	
시·군비	1,428,492	1,456,492	1,484,492	1,484,492	1,484,492	5,853,968	
기타(융자, 자담)	1,552,080	1,562,080	1,572,080	1,572,080	1,572,080	6,258,320	